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379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3.

발 의 자 : 이종욱 · 임이자 · 김도읍
안철수 · 김미애 · 안상훈
김상훈 · 박덕흠 · 이소희
최은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건축물의 정기점검 제도를 두고 화재안전성능 등 중대한 결함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, 건축물의 용도, 규모, 건축자재, 구조, 피난·방화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화재위험도를 등급화하는 체계는 미비한 실정임.

특히 공장·창고 등 산업시설은 화재 발생 시 가연성 건축자재와 복잡한 내부 구조, 피난동선 훼손 등이 결합되어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, 기존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이나 피난약자 이용시설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산업시설의 화재위험을 사전에 선별·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.

이에 공장·창고·물류시설 등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화재위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고, 관리자가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필요한 보수·보강 등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

화재위험을 사전에 관리하고자 함(안 제29조의3 신설).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2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9조의3(화재위험등급의 설정)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장·창고·물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, 규모, 건축자재 및 화재안전시설·설비 등에 따라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화재위험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

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29조의3(화재위험등급의 설정)</u>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화재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화재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장·창고·물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, 규모, 건축자재 및 화재안전시설·설비 등에 따라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. ②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화재위험등급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. ③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등급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.